

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

협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의견서 작성서식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정성·정량적인 평가항목을 명기하였습니다.

사업 개요

- 계획명 : 동작구 노량진동 39-20 일원 역세군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
- 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9-20번지 일원
- 승인·확정 : 서울특별시(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)
- 계획규모 : 1,022.0m²
- 계획목적 : 청년층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
- 재해저감시설 : 가배수로, 임시침사지 등

종합의견

- 임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계획 재해영향검토서 미비하며, 본 설계시 반영하여 우기시 재해방지가 필요함
- 지하3층으로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구조물 철저한 토목설계 필요함
지하층 공사시 인접건축물, 주변도로 안전과 현장내 안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안전계획이 필요함
- 가배수로, 임시침사지 도서작업 미비함
 -
 -
 -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
【검토의견】

○

- 지하3층 굴토로 인한 주변도로 및 인접지 붕괴 요인
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【검토의견】

○

- 우기시 빗물처리 완벽하게 시공 (단지내 배수처리 및 주변도로 배수처리)
- 협소한 도로 상황으로 인한 교통 체증 및 공사로 인한 소음, 미세먼지

3.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

【검토의견】

○

- 지하3층 터파기 공사로 인한 우기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 붕괴
- 터파기로 인한 주변도로 붕괴 및 인접지 붕괴

4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

【검토의견】

○

- 단지내 현장내 침사지 실시설계에 반영이 필요함

5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

【검토의견】

○

- 의견없음

기타 검토의견

○토목설계시 재해 (흙막이 공법 및 하절기 장마철 우수배수에 대한)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

심의결과

□ 평가서 적정성 검토 [건축분야]

분 야	검토 항목	검토결과	사 유
기초현황 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, 재해발생 현황 조사,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,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 	적정	
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(유효우량, 도달시간, 저류상수 등) 	적정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(산정 방법지점,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) 	적정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(재해위험도 평가표 등) 	적정	
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홍수·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 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-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 	적정	

① 검토결과 란에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“적정”, “미흡”을 구분하여 명기

※ “적정” :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·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

“미흡” :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,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,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

② 단, “미흡”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 예) 저감대책 부존, 산정 근거 미비 등

□ 심의결과

(원안통과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모두 “적정”으로 판단되고,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

(조건부 협의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1개가 “미흡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

(재작성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2개 이상이 “미흡”으로 판단되는 경우

원안통과	조건부 협의	재작성
	0	

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

협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의견서 작성서식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정성·정량적인 평가항목을 명기하였습니다.

사업 개요

- 계획명 : 동작구 노량진동 39-20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
- 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9-20번지 일원
- 승인·확정 : 서울특별시(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)
- 계획규모 : 1,022.0m²
- 계획목적 : 청년층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
- 재해저감시설 : 가배수로, 임시침사지 등

종합의견

- 동작구 노량진동 39-20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는 건축물로 이용되고 있는 평지지역으로 계획지구 반경 350m 이내에 지하철 9호선, 1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대상지 주변 건축물 현황으로는 계획지구 동측으로 약 60m 이격되어 동작구청이 위치하고 있으며, 북측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, 남측으로는 연립주택등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음.
-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의 항목에 따라 기초조사가 이루어졌고, 하천재해, 내수재해, 토사재해, 바람재해 등의 재해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는 지역으로서 아래 검토의견과 같이 상세검토를 통한 일부내용 보완이 필요함.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
【검토의견】

- 계획대상지는 기존 도시지역으로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, 계획지구가 내수재해 관리지구(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)에 해당되므로 본 검토에 제시된 내수침수예방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
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【검토의견】

- 의견 없음

3.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

【검토의견】

- 사업대상 면적이 5천㎡미만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없으므로 본 검토서에서 제안한 저감 방안이 실시설계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 - 토사유출의 저감을 위한 임시침사지 설치
 - 우수처리계획 수립
 - 건축물 내풍설계 수행

4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

【검토의견】

- 계획대상지 최종 유출부만 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대상지 내부의 세부우수계획이 미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실시설계시 세부 우수계획 수립이 필요하며, 우수관거의 계획빈도는 최소 30년 빈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- 본 사업은 착공과 동시에 지하굴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, 실시설계시 지하굴착시 외부 표토 유입수와 지하수 유입 등에 대한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.

5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

【검토의견】

- 실무지침에 의거 적절히 작성됨

기타 검토의견

- 의견 없음

심의결과

□ 평가서 적정성 검토 [수자원분야]

분 야	검토 항목	검토결과	사 유
기초현황 조사	▪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, 재해발생 현황 조사,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,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	적정	
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	▪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(유효우량, 도달시간, 저류상수 등)	해당없음	행정단계로 홍수량 미 산정
	▪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(산정 방법지점,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)	해당없음	행정단계로 토사유출량 미 산정
	▪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(재해위험도 평가표 등)	해당없음	행정단계로 사면재해위험도 미 평가
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	▪ 홍수·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 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-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	적정	

- ① 검토결과 란에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“적정”, “미흡”을 구분하여 명기

※ “적정” :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·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

“미흡” :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,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,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

- ② 단, “미흡”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 예) 저감대책 부존, 산정 근거 미비 등

□ 심의결과

(원안통과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모두 “적정”으로 판단되고,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

(조건부 협의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1개가 “미흡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

(재작성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2개 이상이 “미흡”으로 판단되는 경우

원안통과	조건부 협의	재작성
○		

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

협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의견서 작성서식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정성·정량적인 평가항목을 명기하였습니다.

사업 개요

- 계획명 : 동작구 노량진동 39-20 일원 역세군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
- 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9-20번지 일원
- 승인·확정 : 서울특별시(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)
- 계획규모 : 1,022.0m²
- 계획목적 : 청년층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
- 재해저감시설 : 가배수로, 임시침사지 등

종합의견

○ 대상 사업지의 침수 위험 검토 필요

-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영향도 중요하지만, 사업지 자체의 침수 위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, 필요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. 주변 한강 등의 계획홍수위를 고려한 계획부지고 설정이 필요함

- 내수침수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 등의 침수예방대책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. 그러나 추후 세부계획 검토 시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제시를 기대함

○ 개발 중 토사유출량의 발생이 예상됨

- 이로 인한 주변 피해 감소를 위해 임시침사지 설치를 계획함

- 적정한 용량의 침사지를 계획하고, 공사 중 가배수로 등의 유지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

○ 도심지에서 공사가 진행되므로 지반침하 등에 대한 부분 분석 필요. 특히 도심지에서 굴착이 이루어지므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.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
【검토의견】

○

-
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【검토의견】

○

-

3.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

【검토의견】

○

-

4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

【검토의견】

○

-

5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

【검토의견】

○

-

기타 검토의견

○

○

심의결과

□ 평가서 적정성 검토 [상하수도분야]

분 야	검토 항목	검토결과	사 유
기초현황 조사	▪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, 재해발생 현황 조사,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,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	적정	
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	▪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(유효우량, 도달시간, 저류상수 등)	적정	
	▪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(산정 방법지점,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)	적정	
	▪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(재해위험도 평가표 등)	적정	
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	▪ 홍수·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 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-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	적정	

① 검토결과 란에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“적정”, “미흡”을 구분하여 명기

- ※ “적정” :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·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
 “미흡” :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,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,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

② 단, “미흡”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 예) 저감대책 부존, 산정 근거 미비 등

□ 심의결과

(원안통과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모두 “적정”으로 판단되고,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

(조건부 협의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1개가 “미흡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

(재작성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2개 이상이 “미흡”으로 판단되는 경우

원안통과	조건부 협의	재작성
○		

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

협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의견서 작성서식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정성·정량적인 평가항목을 명기하였습니다.

사업 개요

- 계획명 : 동작구 노량진동 39-20 일원 역세군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
- 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9-20번지 일원
- 승인·확정 : 서울특별시(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)
- 계획규모 : 1,022.0m²
- 계획목적 : 청년층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
- 재해저감시설 : 가배수로, 임시침사지 등

종합의견

-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
 - 하천범람 또는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북측으로 약 420m 떨어진곳에 셋강이 위치하고있어 사업대상지의 표고보다 낮은지역으로 하천재해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.
-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
 - 사업지가 도시지역이므로 사면재해는 발생하지 않음.
 - 토사재해는 터파기 공사중 토사유출량 증가에 의한 공사장 주변하류부 피해에 대하여는 개발중 토사유출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어 저감대책 필요함.
- 지반재해 및 지진피해
 -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는 사업구역의 연약지반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없음.

○ 바람재해

- 강풍에 의한 구조물 피해는 건축물 구조물 계획시 내풍설계 필요
- 서울시 기본풍속이 26m/s(100년빈도) 기준임.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
【검토의견】

○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

- 계획대상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9-20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일원으로 토지경계지역은 도로구간으로 위치하며 인근 건물과 근접하고있어 인근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함.
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【검토의견】

○ 해당사업시행으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- 계획대상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9-20 일원으로 공사중 주변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은 적을것으로 예측되나 청년주택 공사시 토공사(터파기) 사업 이므로 공사중 토사유출방지시설등이 필요함.

주변 인근주민의 재해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3.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

【검토의견】

○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는

- 금회 계획에 따라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재해의 유형으로 하천 및 내수, 토사, 지반 및 지진, 바람재해등에 대하여 검토
- 예측결과 계획사업 동작구 노량진동 39-20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시 토공사 위주의 공사이므로 주변영향은 없을것으로 판단됨.

4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

【검토의견】

-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은
 - 토사유출 방지계획(임시침사지1개소)는 공사장내에 가배수로의 오염수를 1차,2차 정재된 우수만 기존우수관거로 배출토록 설계보완이 필요함,

5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

【검토의견】

- 적정함.

기타 검토의견

- 계획대상지 와 인접한 건물과거리 3m이므로 공사중 터파기 가시설 안정성확 보 되도록 검토필요함.
- 우기시 배수계획은 인근 기존배수시설에 배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집중호우 (100mm/1h당)시에는 별도 배수계획등이 필요함.

심의결과

□ 평가서 적정성 검토 [토목시공분야]

분 야	검토 항목	검토결과	사 유
기초현황 조사	▪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, 재해발생 현황 조사,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,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	적정	
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	▪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(유효우량, 도달시간, 저류상수 등)	적정	
	▪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(산정 방법지점,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)	적정	
	▪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(재해위험도 평가표 등)	적정	
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	▪ 홍수·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 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-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	적정	

① 검토결과 란에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**“적정”, “미흡”**을 구분하여 명기

- ※ **“적정”** :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·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
“미흡” :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,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,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

② 단, **“미흡”**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 예) 저감대책 부존, 산정 근거 미비 등

□ 심의결과

(원안통과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**모두 “적정”으로 판단되고,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**

(조건부 협의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1개가 “미흡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**

(재작성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2개 이상이 “미흡”으로 판단되는 경우**

원안통과	조건부 협의	재작성
○		

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

협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의견서 작성서식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정성·정량적인 평가항목을 명기하였습니다.

사업 개요

- 계획명 : 동작구 노량진동 39-20 일원 역세군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
- 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9-20번지 일원
- 승인·확정 : 서울특별시(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)
- 계획규모 : 1,022.0m²
- 계획목적 : 청년층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
- 재해저감시설 : 가배수로, 임시침사지 등

종합의견

-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및 민원원최소화 방안을 제시바람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
【검토의견】

○의견없음

-
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【검토의견】

○의견없음

-

3.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

【검토의견】

○의견없음

-

4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

【검토의견】

○의견없음

-

5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

【검토의견】

○의견없음

-

기타 검토의견

○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및 민원원최소화 방안을 제시바람

심의결과

□ 평가서 적정성 검토 [도로교통분야]

분 야	검토 항목	검토결과	사 유
기초현황 조사	▪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, 재해발생 현황 조사,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,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	적정	
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	▪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(유효우량, 도달시간, 저류상수 등)	적정	
	▪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(산정 방법지점,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)	적정	
	▪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(재해위험도 평가표 등)	적정	
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	▪ 홍수·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 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-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	적정	

① 검토결과 란에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**“적정”, “미흡”**을 구분하여 명기

- ※ **“적정”** :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·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
“미흡” :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,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,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

② 단, **“미흡”**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 예) 저감대책 부존, 산정 근거 미비 등

□ 심의결과

(원안통과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**모두 “적정”**으로 판단되고,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

(조건부 협의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1개가 “미흡”**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

(재작성)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(5개) 중 **2개 이상**이 **“미흡”**으로 판단되는 경우

원안통과	조건부 협의	재작성
	○	